



거창군  
Geochang County

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.

# 공 보

제713호 2019. 8. 28.(수)



선	기관의 장
결	

## 고 시

- 제2019-100호 도로명주소 고시 ..... 2
- 제2019-101호 거창군관리계획(교통시설:중로2-10호선외2개소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.. 4
- 제2019-102호 거창군관리계획(방재시설:하천) 결정(경미한 사항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..... 6

## 공 고

- 제2019-1070호 거창군계획시설(시설:수도공급설비)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·공고 .... 7
- 제2019-1091호 공시송달공고 ..... 10

회 램									
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 행 : 거창군

편 집 : 기획예산담당관 (055-940-3043, 행정 3043)

※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(<http://www.geochang.go.kr>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

## 도로명주소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. 8. 28.

거창군수

○ 부여한 도로명주소 :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대야로 17 등 7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고시일	도로명 부여(폐지)사유	비고
(별 도 열 람)				

○ 도로명주소 사용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·변경·폐지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·변경·폐지는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 제7조의3 및 제8조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 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.
-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(☎055-940-3312)에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[www.juso.go.kr](http://www.juso.go.kr)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## ○ 도로명주소 부여

일련 번호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고 시 일		도로명부여사유	비고
			도로명	도로명주소		
1	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해평리 993-5	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가북로 886-8	2009-12-28	2019-08-28	행정구역명(거창+함양군) 활용	
2	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수원리 13	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밤티재로 150-297	2009-12-28	2019-08-28	노혜라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	
3	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완대리 1079	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빼재로 1107-14	2009-12-28	2019-08-28	밭이 많아서 붙여진 옛지명이 반영된 도로	
4	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444-14	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 260	2009-12-28	2019-08-28	행정구역명(거창+함양군) 활용	
5	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기리 732	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지산로 1211-15	2009-12-28	2019-08-28	노혜라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	
6	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도평리 376-3	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당대고개길 79	2009-04-01	2019-08-28	밭이 많아서 붙여진 옛지명이 반영된 도로	
7	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대야리 1433	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대야길 17	2009-04-01	2019-08-28	행정구역명(거창+함양군) 활용	

**거창군관리계획(교통시설:중로2-10호선외2개소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**

1. 거창군관리계획(시설 :도로)의 결정(변경)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경상남도 사무 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2. 관계 도서[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(<http://luris.molit.go.kr>)에서 열람가능]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(☎ 055-940-3583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19년 08월 29일  
거창군수

1. 거창군관리계획(교통시설:도로) 결정(변경) 조서 및 사유서  
가. 교통시설(도로)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규 모				기 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 형 용 태	주 요 경 과 지	최 결 정 일	비 고
	등급	류 별	번 호	폭 원 (m)								
기정	중로	2	10	15	보조간선도로	1,065	중로1-10	중로2-14	일반도로	셋별중교	건고194호 ('76.12.7)	
변경	중로	2	10	15	보조간선도로	534	중로1-10	소로1-74	일반도로	-	-	
변경	중로	2	77	15	보조간선도로	365	소로1-74	중로2-14	일반도로	셋별중교	-	
신설	소로	1	74	10	국 도로	220	중로2-10	중로2-77	일반도로	-	-	
기정	소로	2	84	8	국 도로	511	중로1-10	중로2-10	일반도로	-	경고103호 ('78.3.20)	
변경	소로	2	84	8	국 도로	527	중로1-10	중로2-77	일반도로	-	-	

나.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중로2-10	중로2-10	• 노선 축소 - B=15m, L=1,065m→534m (감 531m)	• 지장물 저축을 최소화하고, 원활한 도로선형 유지를 위해 개설이 곤란한 지역을 제외하여 선형을 변경함에 따라 노선을 분리하여 축소 변경함
	중로2-77	• 노선분리 및 도로명 부여 - B=15m, L=1,065→365m (감 700m)	• 지장물 저축을 최소화하고, 원활한 도로선형 유지를 위해 개설이 곤란한 지역을 제외하여 선형을 변경함에 따라 노선을 분리하고 도로명을 부여함
-	소로1-74	• 노선신설 - B=10m, L=220m	• 지장물 저축을 최소화하고,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로2-10호선 및 중로2-77호선과 연계한 노선을 신설함

소로2-84	소로2-8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노선연장 및 선형변경 - B=8m, L=511→527m (증 16m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중로1-11호선과 소로3-95호선 간 단절된 도로망 연결하기 위하여 노선신설</li> </ul>
--------	--------	--	--

2. 관계 도면 : 실음생략

●거창군 고시 제2019-102호

거창군관리계획(방재시설:하천) 결정(경미한 사항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1. 거창군관리계획(방재시설:하천)의 결정(변경)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경상남도 사무 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(경미한 사항 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2. 관계 도서[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(<http://luris.molit.go.kr>)에서 열람가능]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(☎055-940-3583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19년 08월 29일

거창군수

1. 거창군관리계획(방재시설:하천) 결정(변경) 조서 및 사유서

가. 하천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표시번호	시설명	시설의세분	위 치			연 장 (km)	폭 원 (m)	면 적 (㎡)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기 점	종 점	주 요 경과지					
기정	2	위천	지방하천	북상농산 14	거창대평 1485-1	거창2교	17.25	50 ~160	1,725,559	경고465호 (92.12.24)	
변경	2	위천	지방하천	북상농산 14	거창대평 1485-1	거창2교	17.25	50 ~160	1,707,367		경미한사항 변경

나. 하천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2	위천	·하천 변경 - 위치 : 북상농산14~거창대평1485-1 - 연장 : 17.25km - 면적 : 1,725,559㎡→1,707,367㎡ (감 18,192㎡)	· 위천 하천정비기본계획상 하천구역과 군계획시설 하천의 불일치로 인해 불필요한 사유재산권 침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하천구역선과 하천계획선을 일치 시키고자 군관리계획 선형 변경

2. 관계 도면 : 실음생략

## 거창군계획시설(시설:수도공급설비)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·공고

『거창읍 가지리 배수지 신설사업』 추진에 따른 거창군계획시설(시설:수도공급설비)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2019. 8. 26.

### 거 창 군 수

1. 사업시행지의 위치 :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산196-11번지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  - 종 류 : 군계획시설사업(시설:수도공급설비)
  - 명 칭 : 거창읍 가지리 배수지 신설사업
3. 사업시행 개요

종류	위 치	사업규모(m <sup>2</sup> )		최 초 결정일	사업기간	비고
		결정 면적	금회 시행면적			
유통 및 공급시설 (수도공급설비)	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산196-11번지	973.0	973.0	거고 제2019-68호 (2019.6.26.)	실시계획인가일로 부터 2019.05.30	

4.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 - 성 명 : 거창군수(상하수도사업소장)
  - 주 소 :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
5. 열람기간 :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

- 6. 열람장소 : 거창군청 도시건축과(☎055-940-3583)
- 7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: 붙임참조
- 8. 의견제출 및 열람 :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서류는 위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토지·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주민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*의견서(서식)**

- 실시계획(안)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
- 성 명 :
- 연락처 :
- 기타 참고사항.



□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

일련 번호	소 재 지	지번	지목	지적 면적 (㎡)	편입 면적 (㎡)	소유자		소유권 이외의 권리		비고
						주소	성명	권리명	권리자	
합계	-	-	-	973	973					
1	거창읍 가지리	산196-11	임	973	973		거창군			

## 공 시 송 달 공 고

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제21조제3항에 의거 「완대지구」 지적재조사사업 조정 금액 및 납부고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공고대상 : 1명(붙임참조)
2. 공고기간 : 2019. 8. 28. ~ 2019. 9. 11.(14일간)
3. 공고장소 : 전국 시·군·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
4. 기타사항

가. 공고기간 만료 시 「행정절차법」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.

나.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 지적재조사담당(☎055-940-3322)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공시송달 조서 1부. 끝.

2019. 8. 28.

## 거 창 군 수

별도붙임 공시송달 조서 1부. 끝.